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년 10월 02일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8년 10월 07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10월 16일(제2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8 - 39호

2.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1010비전 실천 및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기업사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 1)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안 제4조)
- 2) 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안 제5조)
- 3)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시상(안 제6조, 제7조)
- 4) 군정홍보매체 활용 기업홍보(안 제8조)
- 5) 중요한 협약체결 시 군수실 등 편의제공(안 제9조)
- 6) 기업애로상담관 지정·운영(안 제10조)

다.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

1) 유치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안 제11조)

2) 산업시설용지 지원(안 제12조)

○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또는 장기대부

○ 개별공시지가로 재산평정,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3) 대부료 면제(안 제13조)

○ 원자재 100분의 6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동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받아 면제

4) 대부료 이차지원(안 제14조)

○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유재산인 공장용지, 임대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5년간 대부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5) 산업시설용지, 대부료 면제, 대부료 이차지원의 지원기준 규정(안 제15조)

6) 관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제품 발굴·홍보, 시장개척 등 판로지원(안 제16조).

7) 공산품전시관 설치·운영 (안 제17조)

8) 해외품질규격인정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안 제18조)

9)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안 제19조)

10) 군 법률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안 제20조)

11) 신규산업단지 연접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안 제21조)

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

1) 노동단체의 체육, 문화활동비용 일부지원(안 제22조)

2)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안 제23조)

3) 근로자 주거 지원(안 제24조)

○ 군내 이주 근로자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 알선

○ 10가구 이상 사원주택 집단건립 시 부지알선, 진입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 지원, 부지매입비 100분의 30 지원

마. 각종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둠(안 제25조)

바. 보조금 집행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함(안 제26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 현재 우리 군 경제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1010추진단에서 목적이 유사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 기업의 신설, 이전, 증설 등 우리 군에 기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개의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어떤 혜택

이 주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례와 통합하여 1건의 조례로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